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시행안내

(자료제공: 공공의료과 ☎ 033-249-2923)

난임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 및 지원 금액이 확대됩니다!

- ❖ 지원대상 : 난임진단서를 받은 난임부부
※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포함
- ❖ 지원기준: 소득수준·연령 무관 도내 거주 난임부부
- ❖ 주요내용: ① (지원기준 확대) 부부당 25회 → **출산당 25회로 확대**
② (연령구분 폐지)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③ 공난포, 미성숙난자 등 비자발적인 시술중단의 경우에도 지원

구 분		지원금액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지급(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 ❖ 시행시기: 2024. 11. 1.
- ❖ 신청방법: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등)
※ 사실혼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불가)

지원신청	지원자격 확인 및 결정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난임 시술
신청자 →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 신청자	신청자 → 의료기관

- ❖ 문의사항: 부인 거주지 관할 시·군 보건소

참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강원특별자치도 내 12개소)

시군	기관명	소재지	시술 방법
춘천	아름다운산부인과의원	춘천시 온의동123-29	체외수정
춘천	강원대학교병원	춘천시 백령로 156	
원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원주시 일산로 20	
원주	연세순풍산부인과의원	원주시 장미공원길 43-6	
강릉	아이앤맘산부인과의원	강릉시 옥가로 21, 4,5층	
춘천	아름다운산부인과의원	춘천시 온의동123-29	
춘천	호산부인과	춘천시 석사동 796-4	인공수정
춘천	강원대학교병원	춘천시 백령로 156	
원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원주시 일산로 20	
원주	연세순풍산부인과의원	원주시 장미공원길 43-6	
강릉	세가온산부인과의원	강릉시 교2동 723-7	
강릉	아이앤맘산부인과의원	강릉시 옥가로 21, 4.5층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홍보

(자료제공: 보건식품안전과 ☎ 033-249-2962)



이·맘·때!

이제, 마음건강을 돌봐야 할 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이 시작됩니다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최대 64만원 지원

서비스 대상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7.1.~12.31.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24.10월 예정)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www.129.go.kr)

서비스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바우처)
- 1:1 대면으로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http://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1회당) :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별 차등화
- 정부지원금 : 392,000원 ~ 640,000원(총 8회 기준)
- 본인부담금 : 면제 ~ 192,000원(총 8회 기준)



가을철 산불예방(11.1.~12.15.) 안내

(자료제공: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 ☎ 033-649-8518)

강원산불방지센터
특별자치도

산불조심

적 알발

산림 100m이내 불법소각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실수로 산림을 태운 경우에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강원특별자치도
산불감시원

매형 / 산불감시원
나 매인데, 내 눈으로 감시한다

안전하고 맛있는, 강원먹거리를 위한 농수특산물 인증제도

(자료제공: 농산물유통과 ☎ 033-249-2622)



✓ 농수특산물 인증제도란?

강원특별자치도의 우수한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생산·저장·가공·포장 등 모든 과정에서 품질을 안전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제품에 부착된 엄지척 인증마크를 통해 인증 제품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마크 도안>



✓ 왜 도지사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할까요?

- 1 강원특별자치도산 농·임·축·수산물 사용으로 푸드마일리지* 감소
* 농축수산물이 생산된 이후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로 푸드마일리지 낮을수록 더 안전한 먹거리라는 것을 의미
- 2 믿을 수 있는 다(多)단계 인증 절차
- 서류 심사(1차 시군, 2차 도) 및 현장확인을 통한 철저한 심사, 도내산 원료 사용 등 사후관리(반기)
- 3 도지사인증마크 제품 소비로 도내 농업 및 식품기업 동반성장 촉진



✓ 품목별 주요 인증제품 ※ 도내 287개 업체('24.10.기준)

- 농산물·농산가공품: 사과, 파프리카, 토마토, 들기름, 된장, 와인 등
- 임산물·임산가공품: 산양삼, 표고버섯, 명이나물절임, 오미자즙 등
- 축산물·축산가공품: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치즈, 꿀, 계란 등
- 수산물·수산가공품: 명태, 장어, 문어, 황태채, 황태포 등



✓ 구입처: 각 시군 농산물 직거래 마켓 및 농수특산물 진품센터(서울)

인플루엔자 · 코로나19 동시접종하고 질병을 이길 병으로 !

(자료제공: 감염병관리과 ☎ 033-249-4613)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 코로나19 동시접종하고 질병을 이길 병으로!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1959.12.31. 이전 출생자)

접종기관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보건소 방문 전 확인 필수)

지원기간

- | | | |
|--|--|--------------------------------|
| • 75세 이상 (1949.12.31. 이전 출생자) | | 2024.10.11.(금) ~ 2025.4.30.(수) |
| • 70 ~ 74세 (1950.1.1.~1954.12.31. 출생자) | | 2024.10.15.(화) ~ 2025.4.30.(수) |
| • 65 ~ 69세 (1955.1.1.~1959.12.31. 출생자) | | 2024.10.18.(금) ~ 2025.4.30.(수) |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주세요

1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하기

2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3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4

접종 후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1 예방접종도우미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1339

KMA 대한의사협회

세계인권선언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자료제공: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 033-813-9935)

□ 세계인권선언문

세계인권선언
-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정한 공개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1조 모든 사람은 형사재판에서 최선의 변호를 보장받아야 하고, 유죄 입증 전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사생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간섭받지 않고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 공격받지 않는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국가 내에서 이진과 거주에 자유가 있고, 출국하고 귀국할 권리가 있다.

제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피난처를 구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함부로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 변경의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

제16조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 없이 결혼할 수 있으며, 결혼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1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공격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합리적인 노동시간과 정기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의 권리가 있다.

제25조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사회복지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초등기초교육은 무상이고 의무적이어야 한다.

제27조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제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제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해지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